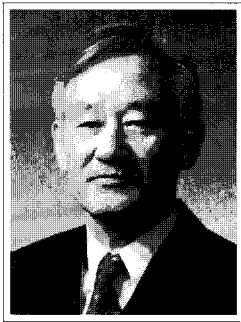


모순



노윤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와 금은보석 등의 귀중품은 항상 도난당할 위험이 있어 국가는 경찰이란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유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토지와 가옥도 강탈, 사기, 파괴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 재산은 노동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산업화가 일어난 18세기 후반 이전에는 농·축산업이 생업의 주류를 이루었을 뿐 산업 노동이란 의미의 전문 직업(노동)은 없었다. 산업 혁명의 여파로 공장을 찾아 도시로 모여든 산업 노동은 자본에 침식되기 시작했고 19세기 중반에는 부의 축적이 자본에 의한 노동의 수탈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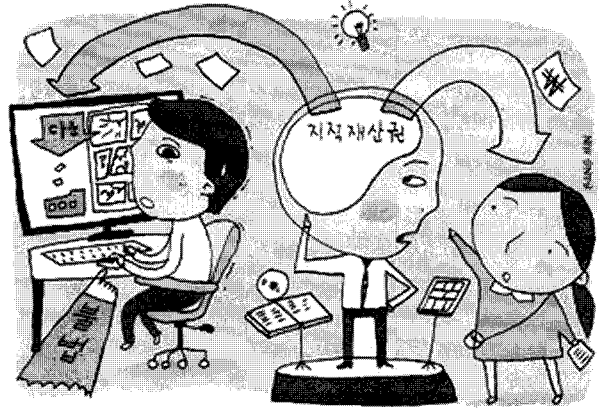
노동자의 처참한 삶을 목격하게 된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를 인용했는데, 이는 그가 헤겔의 법철학 사상을 두호하거나 폄하할 생각이 아니라 노동자가 풍족한 생활과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있다고 선전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함에 있어서 변증 논리가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의 마지막 문장에서 세계의 프롤레타리아를 향해 단결을 외친 것은 노동의 참담한 착취 현상 때문이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모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저작물과 음반의 해적판이 쏟아져 국제 여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지적 재산인 비물질적 재산은 그 성격상 휘발성이 매우 높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비물질적 재산에 대한 안전상의 위험은 일차적으로 이 재화를 창출한 그 성격에 기인한다.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 1994,
최종직위: 영광원자력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
(1994~2000, 최종 직위 :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예로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은행은 컴퓨터 체계들의 전반적인 상호 연결 능력에 의해 파괴와 변조의 위협에 노출하게 된다. 컴퓨터 바이러스, 웹 들은 하나의 태업(Sabotage)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질적 재산이건 비물질적 재산이건 모두 인간의 신체적 활동인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은 부의 원천인 셈이다.



비물질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그 모순을 살펴보자. 1976년 캘리포니아 대학 의학센터는 모양(毛樣) 세포성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의사들은 환자의 혈액이 백혈병 치료를 위한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고, 1981년에 의사들은 그 환자의 혈액에서 개발한 T 세포선(T-cell line)이란 일련의 유전 정보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학 이름으로 특허권을 받았다. 여기서 파생된 생산물의 가치는 30억 \$로 추산되었다.

그 환자는 대학을 상대로 T 세포의 소유권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학의 판정승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는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없으나 과학자들이 그것에서 도출한 정보는 인간 발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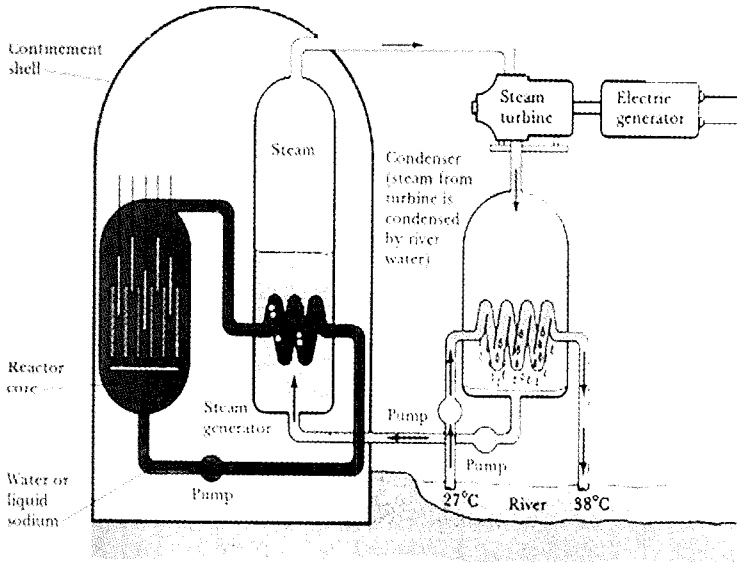
인도의 님 나무(Neem tree) 사례도 예외는 아니다. 수 세기 동안 인도의 농부들은 각종 곤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님 나무의 씨앗을 가루로 만든 다음 논과 밭에 뿌렸다. 님은 농작물에 해가 되지 않는 자연적이고 독성이 없는 일종의 농약으로 사용된 것이다.

1985년 다국적 화학 기업체인 그레이스 회사는 님에 기초한 농약으로 특허를 받아 유기농 무독성이라고 선전하면서 시장에 판매했다. 그 특허권에 대한 이의가 미국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T 세포선에 대한 특허권의 부여와 같았기 때문이다.

한편 1995년 미시시피 대학 의학센터는 「상처 치료에서 심황의 활용」으로 특허권을 부여받았다. 심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인도에서는 심황 분말을 긁히거나 베인 상처를 치료하는 전통적인 치료제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1996년 인도의 과학 및 산업 연구위원회가 특허권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특허권은 취소되었다. 취소 원인은 심황이 인도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미국의 외부에서 산출된 전통적 지식은 그것이 과학 잡지에서 인정되거나 인용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법률 당국이 증거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심황특허권의 취소는 그것이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내용이 과학 출판물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님 나무와 심황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에서 상반된 판례는 비물질적 재산권의 보호란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모순임에 틀림없다.



창조성의 보호나 방해나

오늘날 비물질적 재산과 생명 재산에 대한 과보호가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대중에게 공통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적 선(善)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이디어와 같은 비물질적 재화를 사유 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에 찬성하는 전통적인 주장의 하나는 창조성을 북돋기 위함이었다. 예로서 미국의 특허법을 창시한 토마스 제퍼슨은 과학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함이었고 UN의 산하 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명령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여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이디어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적 소유는 점차 창조성과 혁신을 방해한다고 비판한다. 사유 재산을 창출하는 노동은 신체의 확장이지만 오늘날 비물질적 재산의 창출에는 신체가 점차 공통적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연구 우선 순위

노동의 대가로 형성된 사유 재산의 보호, 특히 지적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부(특히 당국)의 결정이 창조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방해한다는 모순을 원자력 연구 우선 순위 결정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원자력발전소의 열효율(33%)이 화력의 효율(40%)에 비해 낮은 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다. 경수로의 개발 초기(1950년대)에는 핵연료비가 극히 저렴했기 때문에 구태여 과열 증기발생기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기 보다는 포화 증기발생기를 채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우라늄 가격도 폭등하고 있어 최근에는 핵연료비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핵융합로 개발과 같은 장기 연구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시급한 연구 과제로 과열 증기발생기의 개발이나 수소와 전력 생산을 겸용할 수 있는 고온원자로의 연구 개발이 우선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